

5. 주거취약가구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MH마포하우징

긴급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주거취약가구의 공공 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주거 안정 도모

■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. 1. 1 ~ 계속
- 사업대상
 - 재난, 강제퇴거, 가정폭력 등 긴급 주거 위기가구
 - 공공임대주택(영구·매입임대 등) 입주 대기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
 -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, 비주택 거주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
 - 그 밖에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가구
- 사업내용
 - 긴급 주거위기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시거소 운영
 -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 주거취약가구의 임대보증금 등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지원
 - 매입임대주택 확보 추진 : 주거취약가구 지원 및 수요자 맞춤형 등으로 운영
- 추진근거
 - 「주거기본법」 제3조(주거정책의 기본원칙), 제15조(주거비 보조), 제18조(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)
 - 「공공주택특별법」 제4조(공공주택사업자) 및 제45조의 2(기존주택의 임차)
 -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9조(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) 및 동법시행령 제4조(주거지원)
 - MH 마포하우징사업 추진 기본계획(2018.11.2)

■ 세부추진계획

-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: 2019년 상반기 중
 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」을 승계하여 운용
- 긴급 주거위기가구 임시거소용 주택 확보 : 2019년 상반기 중
- 임시거소 등 운영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지원사업 시행 : 2019년 하반기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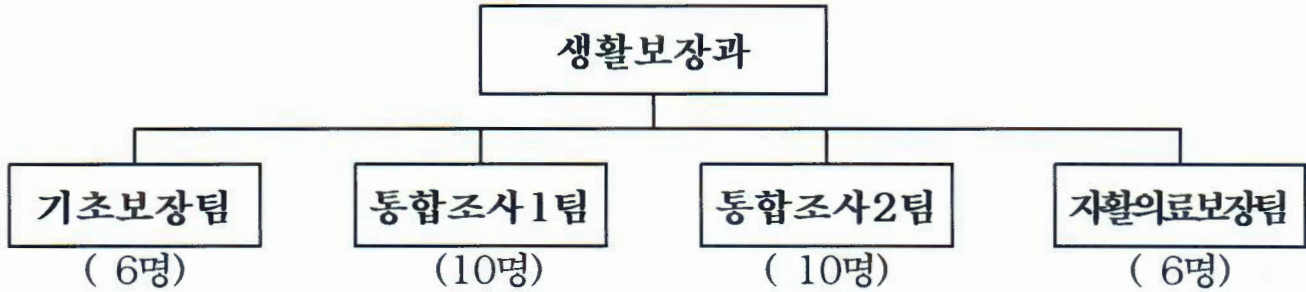
■ 소요예산 : 3,400,000천원(기금)

■ 기대효과

- 긴급 주거위기가구 및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

생활보장과

【조 직】



【인력현황】

구 분	계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비고
정 원	32		1	6	7	11	7	
현 원	32		1	7	6	8	10	

※ 현원에 육아휴직 7명(7급 3명, 8급 3명, 9급 1명) 미포함

【시설현황】

- 마포지역자활센터(대표자: 창기정)
 - 소재지 : 마포구 상암동 1460번지
 - 면 적 : 788.31㎡

【복지급여 수급자 현황】

(2018.12.31.기준)

구분	계	국민기초생활보장				서울형 기 초	한부 모 가 족	기초 연금	장애 연금	차상위 보호	초·중·고 교육비 지원	아동 수당	타 법
		생계	의료	주거	교육								
세대	51,865	4,210	4,614	5,015	794	157	498	21,179	1,719	2,217	1,872	9,275	315
가구원	67,860	5,851	6,669	7,308	1,082	189	961	26,158	1,760	2,970	2,644	11,465	803

※ 타법의료급여(11종) : 북한이탈주민, 군입대자, 시설입소자,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, 이재민, 국가유공자, 국내입양아동, 광주민주화, 의사상 및 의사자의 유족, 행려환자, 기타

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

1.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급여 지원

최저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급여를 제공하여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을 지원하고 선정기준 다층화, 급여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수급자의 자립유인

■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. 1. ~ 2019. 12.
- 사업대상 :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4,633가구 20,910명
(2018.12.31.기준)

보장구분	선정기준	가구	인원(명)	비 고(사업팀)
기초생계급여	중위소득 30% 이하	4,210	5,851	기초보장팀
기초의료급여	중위소득 40% 이하	4,614	6,669	자활의료보장팀
기초주거급여	중위소득 44% 이하	5,015	7,308	주거복지팀
기초교육급여	중위소득 50% 이하	794	1,082	서울서부교육청

■ 세부추진계획

- 맞춤형급여지원 기본계획 수립 : 2019. 1.
- 맞춤형급여 보장결정 : 수급대상자 적극 발굴, 신속한 자격 결정
- 맞춤형급여(생계, 해산·장제급여) 지급 : 행복e음을 통한 적기 지급
- 급여관리의 적정성 제고

■ 소요예산 : 22,000,832천원

- 생 계 급 여 : 21,743,768천원
- 해산장제급여 : 155,064천원
- 교 육 급 여 : 102,000천원

■ 기대효과

- 급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욕구 충족 및 안정적 자립기반 제공
- 수혜자 중심의 지원을 통한 저소득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

2.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문적 통합조사 및 관리

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통합조사 관리로 수급자 적정관리와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최저생활 보장과 적극적 보호로 저소득주민의 사회안전망 확보

■ 사업개요

- 추진근거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및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
- 사업기간 : 2019. 1. 1. ~ 12. 31.
- 사업대상 : 국민기초수급자 등 22개 사업 복지대상자
- 사업규모 : 67,860명 (단위:명)

계	국민기초생활보장				서울형 기초	한부모 가족	기초 연금	장애 연금	차상위 보호	초중고 교육비 지원	아동 수당	타 법
	생계	의료	주거	교육								
67,860	5,851	6,669	7,308	1,082	189	961	26,158	1,760	2,970	2,644	11,465	803

■ 세부추진계획

- 맞춤형 통합조사·관리를 위한 연간조사계획 수립 : 2019. 1.
- 보장별 신규신청 통합조사 및 확인조사, 인적정비, 자격변동 관리 : 연중
 -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확인조사 : 소득, 재산, 부양의무자 등
 - 중점관리대상자(부정수급자 등) 및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점관리
- 신청보장 제외 시 타급여 보장 서비스 적극 연계 : 연중
-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민간연계보장체계 운영 : 연중
-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저소득층 권리구제 활성화 : 연중
- 담당직원 역량강화 : 통합조사 심층사례회의 및 학습동아리 운영

■ 소요예산 : 16,230천원

■ 기대효과

- 맞춤형급여 전문적 통합조사 강화로 보장의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
- 저소득층 주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 보장

3.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

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우나 법적기준 미달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 발굴·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및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

■ 사업개요

- 사업기간: 2019. 1. 1. ~ 12. 31.
- 추진사업
 -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지원
 - 지원대상 :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
 - 지원내용 : 생계급여(맞춤형 생계급여의 1/2~1/3수준), 해산·장제급여
 -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
 - 지원대상 : 질병·실직·사고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 및 수급자
 - 지원내용 : 가구원별 특별생계비 및 공공요금 체납분 지원
 -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
 - 지원대상 : 지역보험가입자(노인·장애인·한부모) 중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
 - 지원내용 : 노인·장애인·한부모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

■ 세부추진계획

- 저소득주민 지원계획 수립 : 2019. 1.
- 대상자 발굴 및 지원 : 연중

■ 소요예산 : 640,000천원(구비 240,000천원, 시비 400,000천원)

- 서울형 기초보장사업 : 400,000천원(시비 100%)
-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: 200,000천원(구비 100%)
-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: 40,000천원(구비 100%)

■ 기대효과

-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적극적 발굴과 지원으로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
-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응급 지원을 통한 가계경제 부담 완화 및 사회적 안전망 가동

4. 사전예방 · 맞춤관리! 의료급여 지원

저소득 빈곤층의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으로 생활안정 촉진 및 사례관리
활성화로 의료인식 개선 및 적정 의료 제공

■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. 1. 1. ~ 12. 31.
- 사업대상 : 의료급여 수급자 5,071세대 7,499명
(1종 : 4,393명, 2종 : 2,303명, 군입대 및 타법 : 803명)
- 근거 : 의료급여법
- 사업내용
 - 맞춤형 의료급여 : 장애인보장구, 요양비,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
 - 본인부담 완화 : 건강생활유지비, 본인부담 보상,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등
 - 의료급여 사례관리 : 의료급여서비스 이용 교육 및 서비스 연계 등
 -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: 연장승인, 선택병·의원 지정 관리 등

■ 세부추진계획

- 의료급여사업 운영계획 수립 : 2019. 1.
- 의료급여서비스 이용교육 : 반기별
- 의료급여대상자 맞춤 서비스 지원 : 연중
-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: 연중
-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및 약물 중복투약자 맞춤형 사례관리 : 연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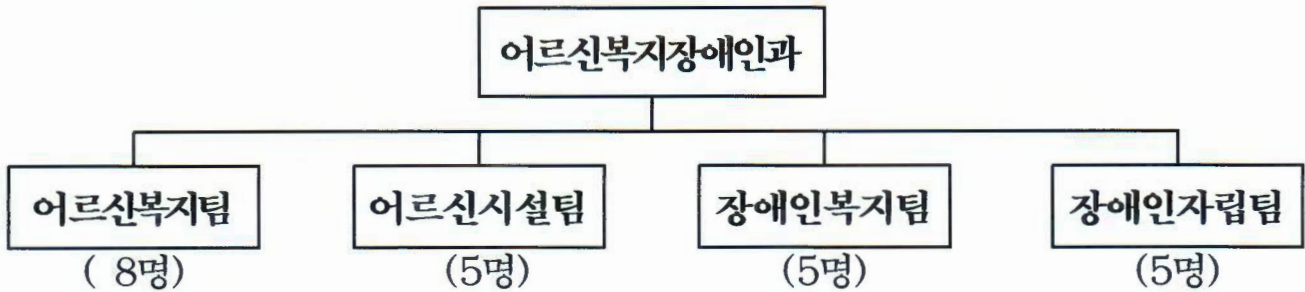
■ 소요예산 : 461,144천원 (국비 50%, 시비 50%)

■ 기대효과

-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급여 자격관리로 의료서비스 적기제공
- 맞춤형 사례관리로 합리적인 의료이용 및 의료급여 재정안정화 도모

어르신복지장애인과

【조 직】



【인력현황】

구 분	계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비고
정 원	22		1	5	6	5	5	
현 원	23		1	5	6	6	5	

※ 육아휴직 1명(9급 시간선택제), 8급 1명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

【노인복지시설현황】

계	여가복지시설			의료복지시설		재가복지 시 설	재가노인 지원센터	노년자비 전담기관	
	노 인 복지관	소규모 복지관	경로당	노인교실	노인요 양시설				노인공동 생활가정
196	2	2	155	14	3	2	14	3	1

【장애인복지시설현황】

계	장애인거주시설	지역사회재활시설	장애인의료재활시설	장애인직업재활시설	개인운영시설	기타시설
23	5	7	1	4	3	3

【노인인구, 장애인 및 베이비부머 현황】 (2018. 12. 31.기준)

65세이상 노인			장애인			베이비부머(55년~63년생)		
계	남	여	계	남	여	계	남	여
48,308	20,219	28,089	13,225	7,492	5,733	43,060	20,601	22,459

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

1.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

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

■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. 1. ~ 12.
- 사업대상 :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
- 2018. 12. 31.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26,038명
- 선정기준액(2019년 기준)

구분	선정기준액	기본공제
단독가구	137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일반재산(주택) - 1억 3,500만원 ▪ 금융재산 - 2,000만원 ▪ 근로소득 - 94만원 공제 후 30% 추가공제
부부가구	219.2만원	

- 지급금액
 - 단독 수급/부부1인 수급 : 25,000원~250,000원
 - 부부2인 수급 : 1인당 25,000원~200,000원
- ※ 2019. 4월부터 소득하위 20% 이하 대상으로 최대 30만원 인상 지급 예정
- 지급방법 : 매월 1회(25일) 개인별 계좌이체
- 추진근거 : 기초연금법

■ 세부추진계획

- 기초연금 감액 제도 개선 및 지급 계획 수립 : 2019. 1.
 - '2만원 단위감액' → '선정기준액 - 소득인정액' 으로 형평성 있는 기초연금 지급
- 기초연금 부당수급자에 대한 환수 : 2019. 1.~12.
- 기초연금 집중 홍보(어버이날행사, 경로행사 등) : 2019. 5월, 10월

■ **소요예산 : 76,588,893천원**

■ 기대효과

- 노인의 소득보장으로 노후 생활 안정 지원
- 노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노인복지증진에 기여